안양리버자이르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공급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안양리버자이르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http://안양리버자이르네.com/)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하여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33-908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며, 아래 주요 개정사항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15.입니다.[청약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최초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접수일 2020.10.08.)]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만안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5.)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2년 이상(2018.10.15.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양시는 물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기도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신청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하여야함)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안양시 만안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5)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혼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본 아파트는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이상을 소유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즉,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됨.(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투기과열지구 – 당첨일로부터 10년 / 조정대상지역 - 당첨일로부터 7년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함.)

※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역(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 [충북] 청주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전역(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 수성 /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 투기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 분양가 상한제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016.11.15. 규칙 개정 시기 반영)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직계존속(나이무관)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조에 따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가능)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이후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의미함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변경)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09.18.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인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당첨 취소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무효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당첨자 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당첨취소 처리 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2순위 당첨 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본 아파트 해당 타입 : 103㎡타입 1세대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되는 경우에 한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안양리버자이르네.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를 기존과 달리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확장형 기준 59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견본주택의 안내자료 및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안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 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해당 (안양시 2년 이상 거주)	기타 (안양시 2년 미만/서울/경기/인천)	(서울/경기/인천)			
일정	2020.10.26(월)	2020.10.27.(화)	2020.10.28.(수)	2020.10.29.(목)	2020.11.04.(수)	2020.11.05.(목)~2020.11.11.(수)	2020.11.16(월)~2020.11.18.(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 특별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청약신청자격서류(10:00~16:00)	주택홍보관 방문 계약 (10:00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한국감정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당사 홍보관 방문 계약체결 (홍보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4,5층)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42254호(2020.10.1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57-1, 157-15, 157-3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층 2개동 총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6세대(일반[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실)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총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하층 배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0001166	01	059.9126A	59A	59.9126	20.8803	80.7929	52.6702	133.4631	37.4867	33	1	2	5	1	2	11	22	3
		02	059.9996B	59B	59.9996	20.8348	80.8344	52.7466	133.5810	37.5411	17	3	2	5	1	1	12	5	1
		03	059.9939C	59C	59.9939	21.1792	81.1731	52.7416	133.9147	37.5375	32	5	2	6	1	3	17	15	2
		04	069.2572	69	69.2572	23.3814	92.6386	60.8851	153.5237	43.3335	19	2	3	5	1	1	12	7	1
		05	074.7388	74	74.7388	24.8144	99.5532	65.7041	165.2573	46.7633	36	2	4	6	-	2	14	22	2
		06	082.0290	82	82.0290	29.3687	111.3977	72.1131	183.5108	51.3247	1	-	-	-	-	-	-	1	-
		07	103.6032	103	103.6032	37.2127	140.8159	91.0794	231.8953	64.8235	1	-	-	-	-	-	-	1	-
계											139	13	13	27	4	9	66	73	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실, 원)

타입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세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계약시	2021-01-18	2021-05-18	2021-12-20	2022-03-18	2022-06-20	입주지정일
59A	33	102	3,4	2~4	6	220,466,840	223,933,160	-	444,40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177,760,000
				5~9	10	226,171,990	229,728,010	-	455,90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182,360,000
				10~14	10	228,454,050	232,045,950	-	460,50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184,200,000
			6	2~4	3	220,466,840	223,933,160	-	444,40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44,440,000	177,760,000
				5~8	4	226,171,990	229,728,010	-	455,90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182,360,000
59B	17	102	5	2~4	3	220,566,060	224,033,940	-	444,60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177,840,000
				5~9	5	226,271,210	229,828,790	-	456,10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82,440,000
				10~14	5	228,553,270	232,146,730	-	460,70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184,280,000
				15~18	4	233,167,000	236,833,000	-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88,000,000
59C	32	101	1	2~4	3	219,871,520	223,328,480	-	443,20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77,280,000
				5~9	5	225,576,670	229,123,330	-	454,70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81,880,000
				10~14	5	227,809,120	231,390,880	-	459,20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183,680,000
				15~20	6	232,373,240	236,026,760	-	468,400,000	46,840,000	46,840,000	46,840,000	46,840,000	46,840,000	46,840,000	187,360,000
		102	2	2~4	3	219,871,520	223,328,480	-	443,20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77,280,000
				5~9	5	225,576,670	229,123,330	-	454,70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81,880,000
				10~14	5	227,809,120	231,390,880	-	459,20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45,920,000	183,680,000
69	19	101	3	2~4	3	248,248,440	252,151,560	-	500,40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200,160,000
				5~9	5	254,697,740	258,702,260	-	513,400,000	51,340,000	51,340,000	51,340,000	51,340,000	51,340,000	51,340,000	205,360,000
				10~14	5	257,227,850	261,272,150	-	518,50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51,850,000	207,400,000
				15~20	6	262,387,290	266,512,710	-	528,90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211,560,000
74	36	101	2	2~4	3	262,436,900	266,563,100	-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211,600,000
				5~9	5	269,233,470	273,466,530	-	542,70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217,080,000
				10~14	5	271,912,410	276,187,590	-	548,10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219,240,000
				15~20	6	277,369,510	281,730,490	-	559,10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223,640,000
		102	1	2~4	3	262,436,900	266,563,100	-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211,600,000
				5~9	5	269,233,470	273,466,530	-	542,70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217,080,000
				10~14	5	271,912,410	276,187,590	-	548,10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54,810,000	219,240,000
				15~18	4	277,369,510	281,730,490	-	559,10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55,910,000	223,640,000
82	1	102	6	9	1	384,527,110	390,572,890	-	775,10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310,040,000
103	1	102	3	15	1	462,760,290	470,036,100	47,003,610	979,80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391,92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세대수 공급금액은 동호수별 상이하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층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한 금액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확정측량 등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지분이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최초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세대는 총 9세대로 함.(101동 201호·202호·203호, 102동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206호)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공급세대 중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59C	69	74	82	103	합계
일반 (기관추천)	장애인		1	1	3	2	2	-	-	9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	1	1	-	-	-	-	2
	중소기업근로자		-	1	1	-	-	-	-	2
다자녀가구	경기도 거주자 (50%)		1	1	1	2	2	-	-	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1	1	1	2	-	-	6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 공급 (75%)	4	4	5	4	5	-	-	22
		일반 공급 (25%)	1	1	1	1	1	-	-	5
노부모부양	-		1	1	1	1	-	-	-	4
생애최초	-		2	1	3	1	2	-	-	9
합 계			11	12	17	12	14	-	-	6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단,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함.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tr><th>구 분</th><th>안양시/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2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이후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존 주택 소유로 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가 견본주택에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13세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7호(의사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장애인복지과 ②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③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④ 국방부 국군복지단 : 복지사업운영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고령자, 장애인 또는 인터넷 취약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시(견본주택 방문 접수 포함) 해당기관에 최초 신청한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함.

▣ 다자녀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13세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안양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지역 우선(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경기도 거주자가 세대수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및 해당건설지역(안양시 2년 이상 거주)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27세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선정기준 : 우선공급(소득기준) → 공급순위 → 거주지역 → 자녀수 →추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

	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8,905,542원 ~ 11,577,20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10,686,650원 ~ 12,467,75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내(4세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기타지역(서울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산정기준표의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 세대수 : 전체 건설량의 7% 범위 내(9세대)**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0.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에 의거 안양시(2018.10.15 이전부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수도권(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를 무효처리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증액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함.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안양시 거주 / 수도권 거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본 아파트 해당 타입 : 103㎡타입 1세대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되는 경우에 한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청약제한 대상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제47조의 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안양시/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음)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됨.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4.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수도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거주자	2020.10.26.(월)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인터넷 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만 방문접수 가능)]
일반공급	1순위(당해)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	2020.10.27(화) 08:00~17:30	인터넷 청약 (PC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1순위(기타)	안양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거주자	2020.10.28(수) 08:00~17:30		
	2순위	수도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거주자	2020.10.29(목) 08:00~17:30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안양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안양시)"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청약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에서 "청약홈" 검색)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서류자동발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 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자동서류발급」⇒「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사전관리] 공고일로부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한국감정원 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약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자 ②「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인증서류(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기관추천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초본 발급시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기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O		출입국 사실 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초본 발급시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기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9.10.16~2020.10.15)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0.11.04(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청약자)
이용기간		2020.11.04.(수)~2020.11.13.(금) 10일간 조회 가능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청약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1.0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6.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제출기한	2020.11.05.(목)~2020.11.11.(수) 10:00~16:00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장소	안양리버자이르네 홍보관(홍보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4,5층)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 제출서류(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하게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출입국 사실 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안양시 2년 이상 거주 자격으로 "당해 지역"신청한 경우) (청약 당첨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부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생략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포함하며, 방문 신청한 자는 제외)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출입국 사실 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등)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해당주택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 관계확인, 기산일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 일시 : 2020.11.16(월) ~ 2020.11.18(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안양리버자이르네 홍보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거봉빌딩 4F)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서명인증서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홍보관에 비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계약자 및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은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 관계확인,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및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 학교, 주변상가, 주변 건축물, 도로 등 기존 주변시설물의 의한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수협은행	1010-1991-9184	자이에스앤디㈜
중도금 및 잔금	수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자이에스앤디㈜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약정 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계약금 계좌인 모계좌(수협은행 1010-1991-9184)로 입금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예시 : 101동 1403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1020201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약체결 시 세대별 별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세대별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을시 모계좌(수협은행 1010-1991-9184)로 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1,2,3,4회차 대출은 이자후불제, 5회차 중도금은 자납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단, 개인의 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 할 경우 계약자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한다.
• 본 아파트의 분양세대 중 103㎡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18.09.11. 발표된「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발생되며, 이는 계약자가 부담함.
(보증 수수료: 보증금액 X 년 0.17%(추후 변동 가능)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현관중문], [바닥 포셀린타일],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광파오븐],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는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1. 발코니 확장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1.01.18	입주지정기간
59A	13,310,000	1,331,000	1,331,000	10,648,000
59B	13,310,000	1,331,000	1,331,000	10,648,000
59C	8,690,000	869,000	869,000	6,952,000
69	8,030,000	803,000	803,000	6,424,000
74	14,850,000	1,485,000	1,485,000	11,880,000
82	24,640,000	2,464,000	2,464,000	19,712,000
103	17,930,000	1,793,000	1,793,000	14,344,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함.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안방)' 등의 표현은 카다로그 기준이며, '계약자의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 할 경우 개별 시공 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창호는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 문의 방향 등 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결로 발생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수협은행	1010-1995-3329	자이에스앤디㈜
중도금 및 잔금	수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자이에스앤디㈜

▣ 별도 선택사항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1. 현관중문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1.01.18	입주지정기간
59A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59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59C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69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74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2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103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바닥 포셀린타일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 고
				계약시	2021.01.18	입주지정기간	
바닥 포셀린 타일	59A	거실+주방+복도	440,000	44,000	44,000	352,000	
	59B		440,000	44,000	44,000	352,000	
	59C		440,000	44,000	44,000	352,000	
	69		660,000	66,000	66,000	528,000	
	74		770,000	77,000	77,000	616,000	
	82		550,000	55,000	55,000	440,000	
	103		2,420,000	242,000	242,000	1,936,000	

- 포셀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포셀린타일 바닥마감의 자재 및 제품은 고유특성, 가공 등으로 실제 시공시 색상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별도 선택사항(현관중문/바닥 포셀린 타일) 납부계좌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수협은행	1010-1991-9237	자이에스앤디㈜
중도금 및 잔금	수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자이에스앤디㈜

▣ 가전 옵션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1.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 고
시스클라인	**59A, 59B, 59C, 69, 74, 82**	1대	선택1	침실1(안방)	875,000	자이에스앤디(주)	
		3대	선택2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2,625,000		
	103	1대	선택1	침실1(안방)	875,000		
		3대	선택2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2,625,000		
		4대	선택3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가족실	3,500,000		

- 시스클라인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환기덕트, 디퓨저,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및 컨트롤러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선택시 컨트롤러 1대로 거실 및 주방 통합제어 가능하며, 거실(또는 주방) 컨트롤러 1대는 기본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 안양리버자이르네는 시스클라인이 거실 및 주방 총 2대가 기본 제공됩니다.
- 침실 선택시 매립형 컨트롤러(난방기능 포함, 난방 컨트롤러 대체)를 침실별 각 1대씩 제공합니다.

2. 시스템에어컨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A,B,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00,000	LG전자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51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20,000		
69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0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51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20,000		
74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40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70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290,000		
82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48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78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360,000		
103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40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70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80,000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7,47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계약 선택시 기본 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을 이용하여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3. 주방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가격	비 고
빌트인 광파오븐	LG전자	MZ385EBT	450,000	하부 드로워 미포함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S711SI24B	5,750,000	
	LG전자	S691SI34BS2	7,650,000	디스팬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	1,450,000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옵션 품목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상기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가전 옵션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로써,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및 별도 선택사항계좌와 상이(예금주 포함)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체결 완료 이후 별도품목 계약일정, 세대별 납부계좌 등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가전 옵션 선택품목의 납부일정은 추후 별도계약품목 계약 전 고지 예정임(별도품목금액의 납부비율은 계약금 20%, 잔금 80% 예정)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부 품목은 계약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다로그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9.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입주자현장 도착 ⇒ ③접수, 교육안내 ⇒ ④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점검표 제출 ⇒ ⑥입주전 보수완료 ⇒ ⑦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하자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준공검사)도서를 기준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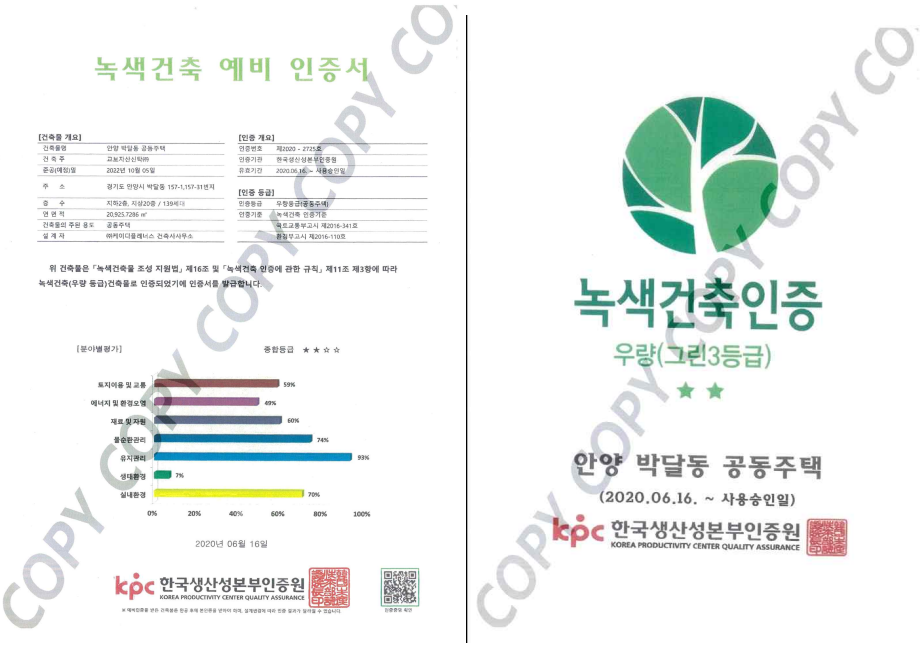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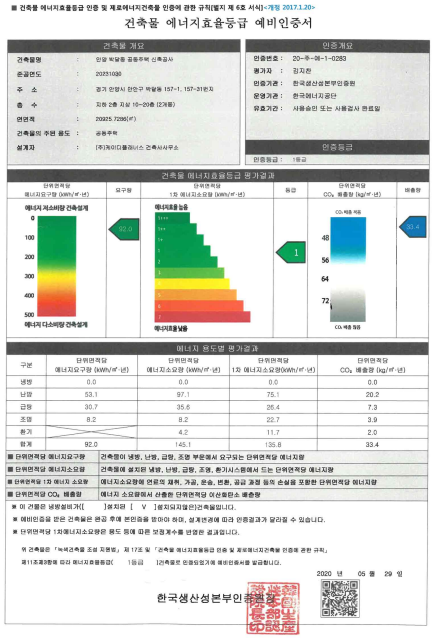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호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나라기술단		
금액	617,538,900	154,385,000	64,762,500	99,302,5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 직접면한 창호는 KS F 2292 기준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간접면한 창호는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및「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세대 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사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 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구 분	등 급
내진중요도 Ⅰ	Ⅶ : 0.19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41,193,360,000원	01212020-101-0005300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10. 유의 사항

▣ 일반 공통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기 바람.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 외관, 기타 시설물의 마감은 실제 시공시 줄눈, 문양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이나 타 공동주택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공동주택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은 2020년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을 알림.
- 단지 내 주거동 숫자 및 단지명 등 BI에 관련된 사항은 인허가 및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59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모형도 또는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1개의 평형 및 타입을 설치하였으므로 견본주택 미건립 평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홈페이지, 견본주택, 상담실 등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직접 확인 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향후 본인의 미확인 및 부주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연출용 설비 배관 .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의 전시품목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상담실의 출입 또는 상담 시 국가가 시행하는 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방역조치 및 사전 예약을 통하여 출입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고객은 필요한 관련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나 고의, 과실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거나 입힌 경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상담실 출입 및 상담 시 사전예약제 적용에 따라 청약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견본주택 관람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 및 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미확인 또는 부주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사전예약제 적용 및 사업주체의 안내사항 중 유선상담의 내용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사업장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시설(공장, 학교, 상가, 도로) 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미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존 건축물과의 이격된 거리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빛공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을 통하여 주변 현황을 표시하였으나 주변현황 전체를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건물의 크기 및 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음. 계약자는 주변현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림.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공급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은 2020년 06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20년 7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기준(주택법, 건축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각종 법규)는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비관리청행위허가(오수관로공사)는 사업승인변경인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와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시공에 반영됨.
- 본 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근 삼봉초등학교의 부족한 일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조공간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50년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2020.03.20. 안양시 고시 제2020-58호) 되었기에 계약자는 계약시 모형도, 카다로그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입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매매계약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 일조공간제어시스템의 설치와 유지보수관리비용은 본 사업장의 사업주체의 부담이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50년간 유지보수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예치할 것이며 만약 그 금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 시는 입주민의 책임과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함. 계약자는 일조공간제어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근 삼봉초등학교의 통행로를 보완하기 위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2M)를 조성하였으며, 공공을 위한 쌈지공원조성으로 입주민외의 공공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공보도 및 쌈지형 공원의 계획은 현장여건, 인.허가 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준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의 설계계획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중이며 구체적인 용도나 이미지, 기타 시설물 등은 인허가 또는 공사상황에 따라 분양 시 안내 및 홍보한 사항과 달리 변경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의 지하에 설치되는 세대창고는 사업주체가 주민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나 용도는 사업주체의 인허가 또는 공사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대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에 따른 사용료 등 비용발생시 비용부담 및 관리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세대창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의 옥탑에는 인허가에 따른 일조공간제어시스템 또는 태양광시설 기타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옥탑에서의 통행, 조망, 미관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장치 및 시설, 조형물의 위치, 재질, 형태, 크기, 규모, 규격 등은 사업주체와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계약자는 옥탑의 일조공간제어시스템 및 태양광시설, 기타 조형물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세대 소음예측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소음저감대책으로 전면 남측(박달로 폭 28M)도로 일부 구간(길이 200M)을 저소음도로포장으로 계획하여 세대의 소음을 법적 기준치 이하(실내소음도 45dB 이하)로 만족하였음. 이는 본공사시 소음실측평가, 현장여건 및 주변현황, 인허가권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소음저감대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소음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격을 보유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는 준공전까지 사업주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선정된 저소음포장 공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주체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한 후 관리청에 이관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대지면적이 실측량을 통해 일부 감소되었으며 준공전 확정측량으로 대지면적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착오 없기 바람.
- 사업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장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함.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주체인 자이에스앤디(주)가 부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축물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 됨.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공간(P.S, PIT, D.A 등)으로 계약면적에 미포함된 공간은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단지내 상가 제외)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됨.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

■ 주차장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 함.(지하2층 주차장 유효높이 2.3m)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73대, 근린생활시설 6대로 총 179대(경차, 장애인주차, 전기자동차주차 포함)계획되어 있음.
- 인접대지와의 관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지하주차장의 차로, 주차구획, 경사로 폭 등 주차장의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진출입구는 1개소임.
- 공동주택과 근린생황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합산대수로 각 동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지하1층 주차장 일부 구간은 아파트 주차와 단지내 상가 주차가 공동으로 이용됨.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완속) 각 동의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별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 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사업장의 지하주차장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의해 지하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층별로 주차대수가 상이 함.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 바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차량경사로 부분은 차량 입출차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설치되는 구조물(캐노피 등)에 따라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 저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홍보물,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다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사업장의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발생.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재활용보관소 포함)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된 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산책로포함)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보행공간,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필로티하부 및 전.후면에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환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조경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설계변경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광고 . 홍보 . 전시된 것과 달리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실 시공시 조경시설물(미술장식품 포함) 등 설치로 인하여 단지외관, 조경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돌쌓기, 옹벽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수경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오른쪽(박달 우회로 도로)에 학교 통학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2M)와 쌈지형 공지가 계획되어있으며 ,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어려울 수 있음.
- 단지와 박달우회도로변(8m) 사이의 국.공유지 대지의 식재 및 보도포장계획은 인.허가 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2동은 1층 필로티로 계획되며, 동별로 필로티 높이가 상이 하며, 필로티 천장고는 인허가 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리모델링 포함),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 함.
- 아파트 필로티는 주행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 될 수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의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규모, 위치 및 개소는 대지 여건 및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문주 설치에 따라 저층부 인접 세대에 시야 간섭 및 빛 공해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필로티에 계획 된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 또는 연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 외부환경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공동으로 사용해야함.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 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부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여름철 기후 특성상 밀폐되어 환기량이 부족할 경우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 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는 일조공간제어시스템, 태양광패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추후 현장여건, 인.허가, 시공과정에서 설치위치 및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각 동의 코어별 1개소를 설치, 총 3개소가 지하1층에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규격, 개소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범죄예방설계가 적용되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및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과 위치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전기PAD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및 현장여건에 따라 그 위치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택형은 동일형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2,300mm, 103펜트형 은 2,400m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 중 전용면적으로 산입되는 초과면적이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 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난방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⑤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

- 본 공사시 세대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됨.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 또는 세탁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더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다용도실 세탁선반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선반 사이즈가 축소 될 수 있음. 확장시 설치되는 발코니2 세탁선반의 사이즈는 발코니2 크기에 따라 상이함.
- 대피공간 또는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평소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에 별도의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세대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 설치 또는 대피공간(82형)을 계획하였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기 바람.
- 하향식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한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 및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기 바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스터드 또는 각재목상+석고보드)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82 복층형, 103 펜트형의 경우 외부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바닥마감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기준 마감자재 시공되므로,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카다로그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전열교환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용승인(준공승인)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소방규정에 따라서 설치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수분양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고,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희망하는 가구.가전의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외부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은 장비 및 배관 등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겨울철 동파발생 등 외부환경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상.하부 또는 수평의 이웃세대가 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 바닥, 외벽에 확장세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창호규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면적이 협소해져 사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거실의 우물천장깊이(단 추가 설치 등), 실의 폭, 등기구 위치, 커튼박스 위치 변경 등 실.내외부의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대피공간, 실외기실, 앞발코니, 뒷발코니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상이함.
- 세대 계약 후 각 세대 보조 주방(주방, 식당과 연접한 발코니)의 바닥 레벨, 배관 위치(입상 배관 형성 가능)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계약 후 각세대 발코니의 내부 마감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빌트인제품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샤워부스, 욕조의 하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일부 세대 현관문 및 공용방화문의 경우 제연공간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경량벽체 및 석고보드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 및 석고보드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외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외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PL창호 개폐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열성은과는 무관 함.
-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피난시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음.(예. 완강기)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가구 내부에는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줄눈은 의장상 오픈줄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 배수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실)내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기 사용공간출입구와 샤워공간규격이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좁을 수 있으며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본공사시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스위치)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설치되는 도어 시공디테일 및 크기, 재질, 시건장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실)내 냉방시설은 계약내용에 따라서 설치되고 설치위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수분양자가 개별 에어컨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69형의 주방창의 경우 다른 타입과 달리 0.5㎡ 미만 창호로 법적으로 채광, 일조, 환기에 문제가 없으나 인접세대 측벽을 바라보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기 바람.
- 59C형은 맞통풍이 되지 않는 코너형평면이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다로그를 계약전 확인하기 바람.
- 59C형 기본형(발코니 비확장) 주방/식당의 경우 싱크 설치로 인해 주방에서 바로 발코니로 출입이 어려우므로 계약전 카다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류는 본공사시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명 등)는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전시품(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수납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며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로 확인 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준공도서에 따름.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실 경우 카다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기 바.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있는 59㎡A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됨.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D/A(설비환기구,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주차램프,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주출입구(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조경식재, 기타시설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 조망, 소음발생, 야간조명, 차량 전조등 등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 등에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내 상가(옥상 난간) 및 문주에 의해 일조 및 조망 저하, 소음, 분지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102동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전면 상가(기존건축물로서 157-13번지)로 인해 조망, 일조, 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사업장의 북측 삼봉초등학교 정문 주변 노상 주차장 위로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교육청과 해당학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본 사업장의 인근 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는 삼봉초등학교 체육관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 및 미확인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전 동 1층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 및 어린이 놀이터에 의해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주동 현관,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를 포함한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인.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인허가 과정 또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 디자인(입면,벽체마감 등),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재질, 간판 위치, 조경, BI(시공사 브랜드)위치 및 내용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필로티 포함 2개층)는 지정석재마감, 필로티 내부 공간은 지정페인트 및 석재마감, 고층부는 지정페인트, 외부 노출 옹벽 및 기타시설물 외벽 등은 지정 페인트 또는 지정석재 등으로 마감되며 인.허가 과정 또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지하1층 및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층 이용시 주차장 이용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림.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 실 배치는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됨을 알림.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쓰레기장 설치로 인해 일부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냄새 발생,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림.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대지 지적확정측량 등을 통해 대지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식재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수 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 및 미확인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환경

- 안양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은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선 기준의 도로 폭이며 현황 도로 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본 사업장 남쪽 및 남서쪽 방향 약 3km내 정보사령부, 예비군훈련장 등의 군부대가 위치하여 군부대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부지는 도심지이므로 반드시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건물 등은 해당 사업자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계획에 따라 분양시점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대금

• 본 아파트 공급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상의 표시 재산을 공급계약서 전문과 같이 공급하고,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지정·통보하는 금융기관 및 공급대금 관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잔금의 납부는 계약자에게 부여된 세대별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공급계약서 전문에 명기한 납부계좌는 계약자에게 세대별로 부여되는 공급대금 전용계좌로서 향후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됨.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함.)

-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또한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공급 계약서에 명기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떤 형태의 납부도 정당한 공급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정한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계약자의 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급대금 입금 시 입금자는 계약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입금이나 제3자 성명을 기재하는 등의 입금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공급계약은 계약금을 납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은 정당하게 성립된 것이며, 공급계약서 제2조의 각 항, 제3조의 각 항을 포함한 공급계약 및 계약의 부대약정 전부가 적용됨.
- 공급대금 및 별도품목 공급대금, 기타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함.

• 할인료 및 연체료 관련

-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대하여 연체 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와 가산금리 3%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함.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2020년 11월 계약 시 예시이며, 계약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1)	가산금리	적용 연체요율
금리 및 연체요율 (납부일 익일부터 적용)	2.55%	3.00%	5.55%

(주1) 한국은행 발표(2020.09.29) '20.08월 중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 [예시] 65일간 연체한 경우

- 전체 연체일수에 대하여 적용 연체요율 5.55% 적용
- 연체료 산술식 = 연체대금 × 연체요율 ÷ 365 × 65일(연체일수)

- 계약자는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중 5회차 납부대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대하여 연 3%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2항의 경우 경제사정 변경 등으로 합산한 연체료율이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연 2%이상 증감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함. 다만, 사업주체가 합산 연체료율의 연 2% 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는 기 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하여 연체료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함.
-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문화재발굴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 공급대금의 변제 충당 순서는 계약자가 부담할 연체료, 선회차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을 적용치 아니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의 가목 내지 나목(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입주금을 완납하여도 이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중도금 납부 관련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1,2,3,4회차 대출은 이자후불제, 5회차 중도금은 자납 조건으로 "갑이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단, 개인의 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본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으로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공급금액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금액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규정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함.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계약세대 중 대출신청 예정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 해당 중도금 납부일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또한, 대출 미신청 또는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개인 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사유(어음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규제 규약에 의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의 비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사정, 기타 본인 귀책사유 등)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예상금액보다 대출금액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에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한함.

※ 중도금 대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발생되며, 이는 계약자가 부담함.
(보증 수수료: 보증금액 X 년 0.17%(추후 변동 가능)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계약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 할 경우 계약자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함.
- 계약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대출 실행이 중지될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을 계약자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연체료 규정이 적용 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함.
-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에 의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세대는 사업주체가 대신 기 납부한 이자를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 시(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연체료 조항을 적용함.
- 대출 미 신청 또는 개인 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이자후불제 미적용에 따른 공급금액 인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 본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정부규제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계약자는 정부규제 및 분양조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 및 미확인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자이에스앤디(주))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앞의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첨부될 예정임. 양도받은 공급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 주관사
상호	자이에스앤디(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10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934557



총139세대	**문의 1833 – 9080** (분양홍보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4,5층) 홈페이지: http://안양리버자이르네.com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거봉빌딩 4층, 5층

■ 분양 문의 : ☎ 1833-908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